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신설〉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16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사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필요성	4
2. 법률 제명	9
3. 기획단 설치·운영의 목적(안 제1조)	10
4. 기획단의 운영원칙(안 제2조)	11
5. 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3조)	12
6. 소관 사무(안 제6조)	14
7. 회의 관련 규정(안 제7조)	15
8. 운영보고서의 국회제출의무 등(안 제9조 및 제10조)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병진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사회·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법무부·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서 한반도 평화변영 법제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변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변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반도 평화변영 법제기획단은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다. 한반도 평화변영 법제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한반도 평화변영 법제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등으로 함(안 제6조).

마. 한반도 평화변영 법제기획단의 회의는 2인 이상의 단원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기획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7조).

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그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필요성

- 제정안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중장기 통일 관련 법제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한반도 평화변영 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됨.
- 제정안은 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기획단장을 포함한 기획단원의 임기, 기획단의 소관 사무 및 회의 운영, 수당 등 지급, 운영보고서 국회제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제정안 조문 구성표 >

제1조(목적)	제7조(회의)
제2조(운영원칙)	제8조(수당 등)
제3조(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운영보고서의 제출)
제4조(기획단장)	제10조(기획단 운영규정)
제5조(단원의 임기)	부칙
제6조(소관 사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법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어 향후 통일이 되더라도 상당기간 상이한 제도로 인한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통일법제 관련 연구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¹⁾

□ 현재 통일법제 관련 업무는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일부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근거하여 총괄하거나 전담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없는 실정임.

< 부처별 통일법제업무 현황 >

구분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근거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²⁾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³⁾	「법제처 직제」 제5조 ⁴⁾
담당부서	통일정책실 (통일기반조성과)	법무실 (통일법무과)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과)
업무내용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의 개선·연구 등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 획 수립·추진, 남북문 제 및 통일 관련 법 무관계 법령안의 기 초·심사 및 남북 교 류협력 관련 법무관 계 법령의 해석 등	통일 법제의 조사· 연구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통일법제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상설 설치를 건의한 바 있음.

- 현재 법제처 통일법제위원회, 법무부 통일법무과 등이 있으나, 전 부처의 통일법제 수요를 통괄하여 대응하거나 전향적인 입법 추진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
-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조직 설치 필요

* 출처: 「민주평통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2019년 2차, 2019. 7. 발간), “남북관계 자주성 확대와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평화법제 구축 방안”, p. 82.

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통일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시행

11.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의 수립·시행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법무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통일법제 업무의 중복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2018년에 국회정보위원회로부터, 2019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각각 법무부·법제처 사업과의 차별성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바 있고, 2017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와 관련한 시정·처리 요구를 받은 바 있음.⁵⁾

□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을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업무를 총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통일법제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체계적인 통일법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조직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개별 법률에서 정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획단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입법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통령

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23.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4) 「법제처 직제」

제5조(기획조정관)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26. 통일 법제의 조사·연구

5) 2017년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통일부 통일법제 구축사업 관련하여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 전체가 공동으로 통일법제연구·구축작업을 하고 통일부가 이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음. 이에 통일부는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연구용역 중복을 피하고, 부처간 공동학술회의 및 통일법제 DB 운영 등을 통해 부처간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법제 연구와 구축을 지속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통일부 주도 하의 체계적인 통일법제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17.12.28.)함. 이후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명칭을 통일부 주관 협의체 명칭정비 기준('18.6.)에 따라 “통일법제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위촉 및 해촉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함.

령6)이나 행정규칙(훈령)7)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 통일법제 관련 별도 전담기관의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통일부, 법제처, 법무부는 현행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 제4조8)에 따라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통일법제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기획단과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소관 사무 비교 >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제정안)	통일법제추진협의회(통일부훈령)
제6조(소관 사무) 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 2.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법제 연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유관부처간 협조 방안 2. 외국의 체제전환 또는 통일 과정에서 의 법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통일법제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사법참여기획단 규칙」(대법원규칙)

7)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8)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법무부·법제처 소속 통일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사법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2. 통일·북한법제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기획단을 설치·운영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8억 1,000만원, 연평균 7억 6,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⁹⁾
-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 통일부와 법무부는, 국무총리 소속 정부기구임에도 민간인을 포함한 다수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기획단의 조직 성격이 명확하지 못하고 정책의 책임 소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개별 부처에 수행 중인 통일법제 관련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9)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무조정실의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유사기구로 참고하여 소요예산을 추계함.

2. 법률 제명

- 제정안은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명으로 하고 있는 바, 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입법례¹⁰⁾는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명의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임.
- 다만, 법률의 제명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함축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성이 있는데, 제명 중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동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기획단이 통일법제 관련 전담기구로 명확히 인식되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명칭이라 보여지는 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통일법제기획단’(예시)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 기획단 설치·운영의 목적(안 제1조)

- 제정안 제1조는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중장기 통일 관련 법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중장기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에서 기획단의 설치목적은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추진’으로 명시하면서도, 안 제6조¹¹⁾에서는 그 소관 사무를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단의 성격이 정책 결정 및 집행기구인지, 연구기관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같이, 안 제1조의 목적 규정과 안 제6조의 소관사무 규정의 내용이 정합성이 부족함에 따라 기획단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제정안 제6조(소관 사무) 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
2.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기획단의 운영원칙(안 제2조)

- 제정안 제2조는 기획단이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 수행을 방지함과 동시에 통일법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과 그 이행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운영원칙) 한반도 평화변영 법제기획단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통일 관련 법제(이하 “통일법제”라 한다) 업무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통일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통일법제 업무는 현재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각각 그 직제규정¹²⁾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처가 없어 업무중복, 비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음.
-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획단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 부처 간 업무의 중복 수행 방지 및 통일법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 설치목적과 입법 취지에 맞게 기획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에도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통일법제추진협의회¹³⁾ 및 정례 공동학술대회 등 협업체계를 통해 통일법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앞의 각주 2), 3), 4) 참조

13) 통일법제추진협의회(총 20인) 현황

※ 2024년도 「통일법제추진협의회」 구성 (총 20인)

- 통일부(2) : 통일정책실장(위원장), 통일기반조성과장
- 유관부처(2) :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법제처 법제교류협력과장
- 민간전문가(16): 권○민 변호사 등

5. 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3조)

- 제정안 제3조는 통일법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기획단은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함.
- 기획단장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부단장은 기획단원 중에서 기획단장이 지명하며, 기획단원은 통일법제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함.

제3조(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통일법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변영 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장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부단장은 기획단원 중에서 기획단장이 지명한다.

④ 기획단원은 통일법제 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기획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기획단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을 위한 필수 인

력으로 기획단원의 인원수, 그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획단이 통일법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기획단장을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것은 통일부가 통일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기획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획단원을 통일법제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통일법제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기획단의 설치목적은 ‘통일법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기획단 설치 이후 현재 통일부, 법무부 등의 직제에 따라 개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업무와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6. 소관 사무(안 제6조)

- 제정안 제6조는 기획단이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을 연구하고,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소관 사무) 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
2.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정안은 기획단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획단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안 제6조의 업무가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어, 안 제1조에 따른 ‘집행기관’의 성격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안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획단의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그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통일 관련 법령 또는 법제와 관련하여’ 등으로 그 범위를 일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7. 회의 관련 규정(안 제7조)

- 제정안 제7조는 기획단의 회의를 단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기획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원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회의) ① 기획단의 회의는 2인 이상의 단원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기획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단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단원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획단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기획단의 회의 소집요건, 개의요건, 전문가 의견청취 등 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소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기획단이 그 본연의 성격이 회의체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8. 운영보고서의 국회 제출의무 등(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정안 제9조는 기획단에게 운영보고서의 국회 제출의무를, 안 제10조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단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조(운영보고서의 제출) 기획단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획단 운영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기관 등의 국회보고 의무는 국회가 국정 통제 등 헌법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며,¹⁴⁾ 보고방식으로는 ‘구두보고’와 ‘보고서 등의 제출’이 있음.
- 제정안은 기획단이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정기적(반기별)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획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기획단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에

14)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2019년 전면개정판, p. 619.) 참조

결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국회보고 관련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전 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국회 보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u>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u>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269